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 신설〉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16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현행법 및 개정안의 내용	2
2. 개정안의 입법취지	3
3. 존속살해죄 존폐론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5
4. 해외입법례	7
5. 개정안 검토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남인순의원 등 21인
2. 발 의 일: 2025. 2. 20.
3. 회 부 일: 2025. 2.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인죄에 대한 가중요건으로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존속살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해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 살인죄로 처벌되고 있음.

아울러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살해는 가족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이며, 배우자 살해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함으로써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Ⅲ. 검토의견

1. 현행법 및 개정안의 내용

현행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는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여 존속살해죄를 일반살해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개정안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여 이를 존속살해죄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현행	개정안
第250條(殺人, 尊屬殺害) ① (생략)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을 殺害한 者は 死刑, 無期 또는 7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신설>	제250조(살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살해) ① (현행과 같음)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 ③ 배우자를 살해한 자도 제2항의 형과 같다.

2. 개정안의 입법취지

현행 형법은 존속살해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하고 있으나,¹⁾ 자녀살해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지 않아,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됨.²⁾

최근 60대 남성이 자신이 직접 만든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하거나, 50대 남성이 부동산 분양사업 실패를 비관해 노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하는 등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을 살해하여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온 사건들이 있었음.³⁾

최근 12년 사이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미수 범죄 사건 260건을 전수 분석한 언론보도에 따르면,⁴⁾ 2014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시도에 생명을 위협받은 미성년자 381명 중 실제 부모

1) 1995년 제3차 형법개정 때 존속살해죄를 삭제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존속에 대한 패륜적 범죄를 무겁게 비난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 법률문화이고, 다른 존속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면서 존속살해죄만 법정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삭제하는 것은 체제상 모순된다는 이유로, 존속살해죄를 존치시키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법정형에 ‘7년 이상의 징역’을 추가하였음(전원재판부 2011헌바267, 2013. 7. 25 결정례 참고)

2) 직계존속이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 보통살인죄에 비해 경하게 처벌되었던 영아살해죄는 2023년 8월 「형법」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음.

「형법」(2023. 8. 8., 법률 제19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박효령, “배우자·자녀 살해도 가중처벌?...‘용인 참극’에 법 개정 논의될까”, 투데이신문, 2025.4.17.,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945>, 최종검색일: 2025. 9. 17.;

리차드 김, “‘자녀 살해’ 해외선 중형인데...한국은 왜 ‘가중처벌’ 안되나”, BBC news 코리아, 2025. 8. 1.,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d0dep4jxy30>, 최종검색일 : 2025. 9. 17.

4) 김지현, 한국일보, “자녀 살해, 사망 아동이 7명?...국가도 모르는 ‘숨은 죽음’ 2배 더 있다”, 2025. 9. 1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116550005046>, 최종검색일: 2025. 9. 17.

손에 목숨을 잃은 자녀는 249명에 이름.

존속살해죄는 범죄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인 비속(卑屬)의 패륜성(悖倫性)에 대한 고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것임.⁵⁾

한편, 배우자 또는 자녀살해도 직계존속의 직계비속에 대한 도덕적 의무의 엄중성에 비추어 본다면, 그 패륜성 내지 반윤리성의 정도가 일반적 살인보다 크다고 할 것임.

즉, 부부는 「민법」에 따라 상호 간 동거·부양·협조할 의무⁶⁾가 있고, 부모는 「민법」,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자녀를 보호하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등,⁷⁾ 미성년 자녀는 특별한 보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부 일방이 배우자를,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경우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커지는 측면이 있음.

또한, 존속살해와 비교하여 배우자 또는 자녀살해가 패륜성 내지 반윤리성 측면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존속살해만 가중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가능함.

5) 헌법재판소 2002. 3. 28. 선고 2000헌바53 전원재판부

6)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7)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자기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을 살해한 경우에도 직계 존속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려는 입법취지가 인정됨.

다만, 존속살해죄를 삭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⁸⁾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등 현행 직계존속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존속살해죄 존폐론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존속살해죄의 폐지와 관련한 논의 및 헌법재판소 결정은 다음과 같음.

존속살해죄의 존치를 주장하는 견해들은 ① 헌법상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으로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존속살해죄는 보통살인죄에 비해서 행위에 대한 반윤리성의 정도가 더 크고 그에 따라 법정형의 경중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② 본 규정의 입법취지는 직계존속의 생명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비속의 패륜성을 무겁게 비난하는 데 있으며, ③ 존속살해죄를 포함한 존속범죄를 폐지할 경우 직계비속의 패륜성에 근거한 범죄를 규율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는 패륜범죄의 증가로 이어져 자칫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이 파괴될 위험을 고려한 것으로, 직계존속의 생명은 그에 따라 반사적으로 강화된 보호를 받을 뿐이라는 것을

8)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582호

논거로 함.

이에 반해 존속살해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① 직계비속은 출생하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직계비속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며, ② 가중처벌규정은 조상숭배라는 봉건적 가족제도를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서 오늘날 가족관계는 개인 대 개인의 평등관계로 취급되어야 하고, ③ 1995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낮추었는데, 그에 따라 최소형의 차이⁹⁾가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보통살인죄에도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존속살해죄를 가중처벌하고자 하는 취지는 보통살인죄의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도 얼마든지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함.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일반 살인죄를 저지른 자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는 현행 형법 제250조제2항에 대하여, 조선시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존속살해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계속되어 온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 내지 전통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점, 존속살해는 그 패륜성에 비추어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한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종래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되어 기존에 제기되었던 양형에 있어서의 구체적 불균형 문제도 해소된 점을 고려하여 합헌으로

9) 보통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음.

판단하였음.

이에 대하여 2인의 **반대의견**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살해하는 경우, 또는 법적인 신분관계는 없으나 가해자와 특별한 은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 등은 일반 살인죄로 처벌하고, 직계존속 살해에 있어서는 양육이나 보호 여부, 애착관계의 형성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형식적 신분관계만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음.

4. 해외입법례¹⁰⁾

외국의 경우 존속살해죄 등 존속대상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로는 프랑스, 대만,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등 소수인바, 이들 국가들은 대체로 존속뿐만 아니라 비속(또는 미성년자)이나 배우자를 살해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음.

○ 프랑스는 존속살해죄(제221-4조 제1항 제2호)와 함께 미성년자살해죄(제221-4조 제1항 제1호) 및 배우자살인죄를 보통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 이 때의 존속은 법률상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직계존속도 포함하며, 그 밖에 형법 제222-3조 제3호(존속가중고문, 가혹행위), 제222-8조 제1항 제3호(존속가중폭행치사), 제222-12조

10) 박찬걸, “존속대상범죄의 가중처벌규정 폐지에 관한 연구 : 존속살해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2호(통권 제82호, 2010·여름호), pp.183-186.

제1항 제3호, 제222-13조 제1항 제3호 등에서도 존속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음.

○ **대만**의 경우 1935년 형법 제정당시부터 존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제272조)을 두고 있으면서, 보통살인죄의 형벌(‘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보다 가중처벌(‘사형 또는 무기징역’)하고 있음.

○ **일본** 형법은 과거에 존속대상범죄로서 존속살해, 존속상해치사, 존속유기, 존속체포감금, 존속체포감금치사상 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1973. 4. 4. 일본 최고재판소는 존속살해죄의 가중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이후 1995. 5. 12. 존속살해죄를 포함한 모든 존속대상범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였음.

○ **독일**의 경우 1941년에 존속살해죄(제217조)를 삭제하여, 현재는 존속에 대한 특별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5. 개정안 검토

2023년, 2024년에 피해자가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양자녀·의붓자녀 포함), 손자녀(양손자녀·의붓손자녀 포함)인 살인범죄 피해자 현황을 보면, 가해자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살해된 피해자는 각각 102명, 85명에 이르며, 미수범죄까지 포함할 경우 각각 183, 172명에 달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살인범죄 피해자 수]

(단위: 명)

구 분	2023년			2024년		
	배우자	자녀	합계	배우자	자녀	합계
살인기수	53	49	102	46	39	85
살인미수등	63	18	81	64	23	87

주: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며, 자녀는 양자녀, 의붓자녀, 손자녀, 양손자녀, 의붓손자녀를 포함함

자료: 통계청, 「경찰청범죄통계」,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전국)

개정안은 자기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을 살해한 경우에도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려는 입법취지가 인정됨.

다만, 현행 「형법」 제51조¹¹⁾는 양형 조건 중 하나로 “피해자에 대한 관계”를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및 자녀 살인의 패륜성에 대한 형벌 가중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양형에서 고려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개정안의 도입논의는 직계존속 살해와 같은 수준의 패륜성과 반윤리성을 인정할 경우에도, 이를 양형에서 참작함에 그치지 않고 개정안에 따라 특별히 가중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존속살해죄를 폐지하여 두 경우 모두 보통살해죄로 처벌하되, 구체적 사안별로 양형을 달리할 것인지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

11)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한편, 현행법은 존속살해죄 이외에도 존속상해·폭행죄, 존속유기·학대죄, 존속체포·감금죄, 존속협박죄 등 존속 대상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배우자 및 직계비속살해죄 신설 시, 이하의 각 범죄들에 대하여도 배우자 및 직계비속 대상 범죄를 신설하여 가중처벌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 : 현행 형법상 존속대상범죄의 법정형]

죄 명	일반범죄	존속대상범죄
살인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중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상해치사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특수폭행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유기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유기죄	7년 이하의 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학대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유기등치상죄	7년 이하의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기등치사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포감금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죄 명	일반범죄	존속대상범죄
중체포감금죄	7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특수체포감금죄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중)체포감금치상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중)체포감금치사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 의 처

02)6788-5053